

석면해체제거업

■ 업무내용

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·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·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·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

■ 등록기준

1. 기술능력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, 건설안전산업기사,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,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·제거작업 방법,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(이하 “석면해체·제거관리자교육”이라 한다)을 이수하고 석면해체·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·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·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

- 1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·건축 분야 건설기술인
- 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·건축 분야의 기술자격
- 3) 토목·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

※인력기준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2. 시설·장비

사무실	장비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성능필터(HEPA 필터)가 장착된 음압기(陰壓機: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) 2. 음압기록장치 3. 고성능필터(HEPA 필터)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. 위생설비(평상복 탈의실,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) 5.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[전동식 방진마스크(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),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(분진·미스트·흙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.05%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)] 6. 습윤장치(濕潤裝置)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	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20일 이내